

#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
소관부서 : 복지정책과

제정 2015· 9· 25 조례 제1161호  
일부개정 2020· 2· 28 조례 제1580호  
일부개정 2023· 3· 14 조례 제1914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이천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”이란 밑반찬을 만들어 저소득 가정에 배달해주는 사업을 말한다.
2. “사랑의 빨래방사업”이란 저소득 가정에서 빨래를 수거하여 세탁 후 배달해주는 사업을 말한다.
3. 삭제 <2020· 2· 28>
4. “생활안정지원”이란 이천시가 지역주민을 위하여 예산을 수반하여 제공하는 제5조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5. “기준 중위소득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)**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사람
2.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[전문개정 2023· 3· 14]

**제4조(지원계획 등)** ①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회계연도마다 생활안정지원

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·2·28>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지원대상
2. 지원내용
3. 지원방법
4. 그 밖에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5조(지원내용)**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·2·28, 2023·3·14>

1. 사랑의 밑반찬사업
2. 사랑의 빨래방사업
3. 명절 위문금품 전달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사후관리)** 시장은 지원결과를 기록·유지하고,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, 지원사유가 없어지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·2·28 조례 제158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·3·14 조례 제191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